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16

발의일자 : 2024. 4. 15.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도병두 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에 국기 게양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천구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의 국기 게양 신설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1)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4. 16. ~ 2023. 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국기 게양 등) ①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구가 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국기 게양 등) ①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구가 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현 행 조 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07. 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52호, 2023. 07.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매년 10월 15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 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 ·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 · 공원 ·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 · 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25.]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 10. 25., 타법개정]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①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영 별표 1에 따른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고층 ·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1.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 3호기(270센티미터×180센티미터) 이상
2. 시 · 군 · 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5호기(180센티미터×120센티미터) 이상
3. 읍 · 면 · 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7호기(135센티미터×90센티미터) 이상